추석 맞이

선물·식사 Q&A

청탁금지법 추석 선물·식사 궁금해요



국민권익위원회

Q **친구, 이웃,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**에게 추석 맞이 선물을 주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도 **청탁금지법의 상한액**을 지켜야 한다?



A 아닙니다. 누구라도 **공직자가 아닌** 친구, 이웃, 연인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**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**

국민권익위원회

Q 민간기업이 **소속 임직원, 고객, 또는 협력업체 직원**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**상한액 범위 내**에서만 가능하다?

A 아닙니다. **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**에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**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**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


국민권익위원회

Q 친구, 지인, 이웃 등이 **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상한액 이하의 선물**만 줄 수 있다?



A 아닙니다. **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**에게는 상한액을 넘는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에도 **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**하고 있으므로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

Q 추석 명절에 **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**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**상한액 범위 내**에사만 가능하다?



A 아닙니다.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에는 **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넘어서 줄 수 있습니다.** 또한,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**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**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

Q **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**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**상한액 범위 내**에서만 가능하다?

A 아닙니다. **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**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**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**합니다.



국민권익위원회

Q 인허가 등 민원 신청인, 인사·취업·입시·지도·단속·감사 등 대상자, 입찰 참가자 등이 **담당 공직자에게 상한액 범위 내**의 선물이나 식사는 제공할 수 있다?

A 아닙니다. **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에게 제공**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**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.**



국민권익위원회

Q 장인, 처형, 동서, 며느리 등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**친족 사이라도 상한액을 넘는**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?



A 아닙니다.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공직자가 **친족관계**(「민법」 제777조의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)에 있는 경우에는 **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능**합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





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

국민권익위원회